

#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 
제1차 총무위원회(2004. 10. 22)

## 1. 심사 경과

- 가. 2004. 10. 15 :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4. 10. 15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 46호)
- 다. 2004. 10. 22 : 제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## 2. 제안 설명 요지(세무과장 강대평)

### 가. 제안 이유

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현실과 괴리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 
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주민세의 농지세할 명칭을 농업소득세할로 변경
- 2) 인용 관련 법령명 정비
  - 도시계획법 ⇒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  - 자동차운수사업법 ⇒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,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  - 도시재개발법 ⇒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- 3) 기타 관련법령의 인용 조항과 용어를 정비함

### 다. 관계 법령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,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,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,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, 관세법, 지방세법, 지방세법시행령

## 3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주)

- 본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

및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내용 중

- 주민세의 농지세할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하는 것과 세무서장이 소득세 할의 신고사항 통보기일을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로 개정하며, 여타 조항의 법조문 인용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 에 의한 것이며
  - “도시계획법” 을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” 로하고, “자동차운 수사업법” 을 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” 으로 하며. “도시재개발법” 을 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” 으로 개정하는 것 도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명칭 및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
-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원안 가결하여도 문제 점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 요지 : 원안 가결 의견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: 없 음